

비수도권 지역인재 인정범위

※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및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을 따름

□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□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범위

-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 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상의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 - * (예시) 단국대 천안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
 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 -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-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 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 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 -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 -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2개 대학 이상 재학 중인 경우

-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
 - －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 - －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-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- －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해당
 - －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 - *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-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- －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 - －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 - *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